

광주지방법원 2022. 5. 10 선고 2021가단14187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로, 담당변호사 김덕은

변 론 종 결 2022. 4. 26.

판 결 선 고 2022. 5. 10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
곡성등기소 2021. 4. 13. 접수 제390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- C은 2019. 8. 5.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1. 6. 21. 사임하였다.
- 원고는 2020. 9. 21.경 D과 40,000,000원을 2020. 12. 31.까지 지급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작성하였다.
- 원고는 2020. 10. 23.경 E와 80,000,000원을 2021. 1. 31.까지 지급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작성하였다.
-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4. 12. 피고와 채무자 원고, 채권최고액 120,000,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2021. 4. 13. 접수 제390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.
- D은 2021. 9. 29.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2020. 9. 21. 20,000,000원 대여금에 대한 2020. 12. 31.까지 40,000,000원 상환채권을 양도하였다.
- E는 2021. 10. 1.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2020. 10. 23. 50,000,000원 대여금에 대한 2021. 1. 31.까지 80,000,000원 상환채권을 양도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호증, 을 1 내지 4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원고는,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80,000,000원을 차용하기로 하였으나 피고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, E가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후 피고에게 그 차용금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호석

별지